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준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693

발의연월일: 2025. 6. 10.

발 의 자:이준석·천하람·우재준

이주영 • 최은석 • 김상욱

이종배 · 김도읍 · 최형두

김재섭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은 경로우대의 개념으로 65세 이상의 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대상 수송시설의 종류는 철도와 도시철도로 한정하고있음.

그런데, 철도와 도시철도는 수도권과 광역시에 주로 집중되어 있으므로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상대적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. 또한, 도시철도 무임수송 적자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어 무임승차 제도의 지속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할 상황임.

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의 자에게 교통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,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률」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한 이용요금 할 인 권고 및 그에 따른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26조의3 신설 등).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운영자(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65세 이상인 자가 대중교통수단(「대중교통의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.
-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라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제공하는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법률 제20506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6조의3(교통이용권의 발급 등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인 자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 교통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.

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카드(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교통카드를 말한다)를 제1항 에 따른 교통이용권으로 발급할 수 있다.
-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교통이용권을 판매・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교통이용권을 판매·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교통이용권을 회수하거나 교통이용권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
- ⑤ 그 밖에 교통이용권의 신청, 발급, 사용, 회수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26條(敬老優待) ① ~ ③ (생	第26條(敬老優待) ① ~ ③ (현행
략)	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
	대중교통운영자(「대중교통의
	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
	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
	교통운영자를 말한다. 이하 같
	다)에게 65세 이상인 자가 대
	중교통수단(「대중교통의 육성
	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
	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
	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이용
	하는 경우 그 이용요금을 할인
	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.
<u><신 설></u>	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
	제4항에 따라 65세 이상인 자
	에 대하여 대중교통수단 이용
	요금을 할인하여 제공하는 대
	중교통운영자에 대하여 대통령
	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
	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
	<u>할 수 있다.</u>
법률 제20506호 노인복지법 일부	법률 제20506호 노인복지법 일부

개정법률 <신 설>

개정법률

- 제26조의3(교통이용권의 발급 등)
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
 65세 이상인 자가 대중교통수
 단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교통
 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청을
 받아 교통이용권을 발급할 수
 있다.
 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카드(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 2조제6호에 따른 교통카드를 말한다)를 제1항에 따른 교통 이용권으로 발급할 수 있다.
 -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교 통이용권을 판매·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교통이용 권을 판매・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교통이용권을 회수하거나 교통이용권을 회수하거나 교통이용권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수 있다.

 ⑤ 그 밖에 교통이용권의 신청,

 발급, 사용, 회수 및 환수 등에

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

 정한다.